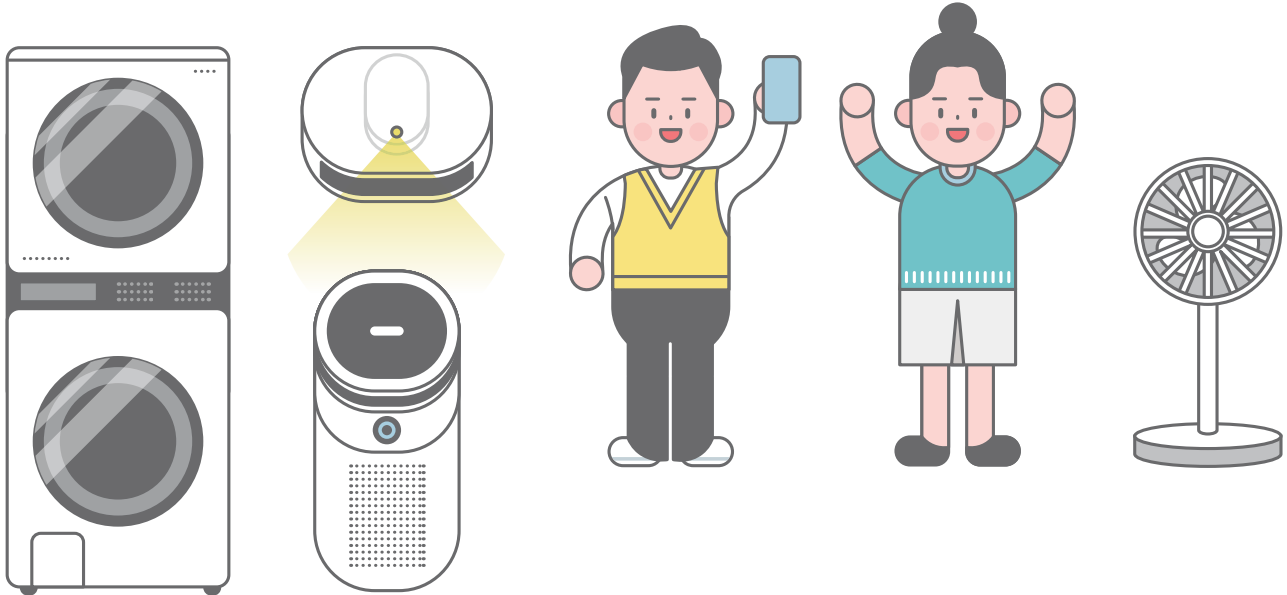




3대 효율관리제도 안내



3대 효율관리제도 안내

- 제도별 문의처
- 효율등급제도 : 052-920-0471~6, 0461~2, 0464~5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052-920-0461, 0463~4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 052-920-0451~6
 -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 eep.energy.or.kr
 - 울산광역시 중구 동천1길 40,
세영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 252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란?

보급률이 높거나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자재 대상으로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준수, 에너지소비효율 신고·표시를 의무화하여 고효율 제품 생산·개발 촉진 및 구매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조, 제16조, 제66조

Q.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 접속 ➡ 제품신고 및 인증신청 ➡ 효율등급제도 ➡ 하단 제품신고 바로가기



Q.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요?

에너지소비효율표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효율관리기자재 - 42 품목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셋톱박스,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디스플레이, 모니터, 펌프, 컴퓨터, 의류관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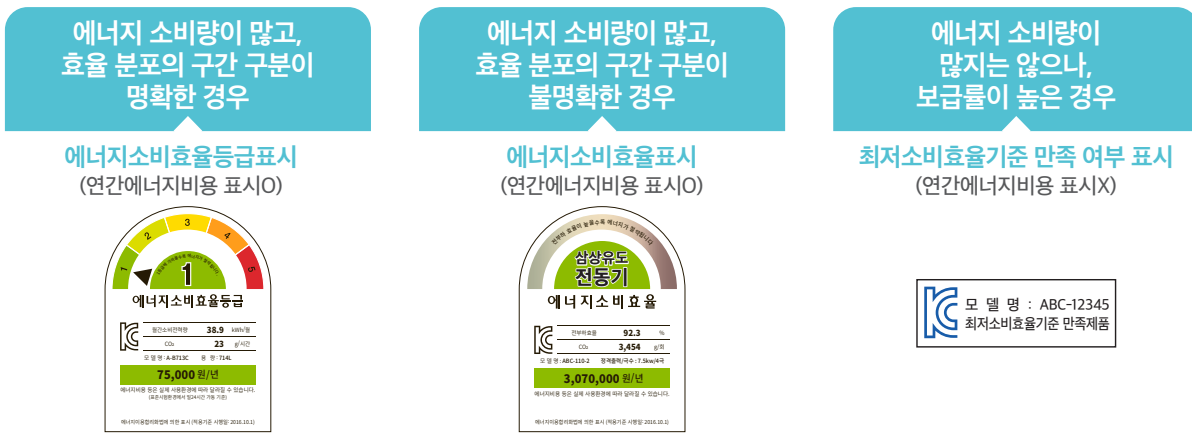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효율관리기자재 - 25 품목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레인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복합기*, 비데

* 전기냉온수기(순간식) 및 복합기(잉크젯)은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Q. 라벨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이란?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준 만족제품은 저감우수라벨을 표시할 수 있고,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라벨을 의무 표시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Q.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 접속 ➡ 제품신고 및 인증신청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하단 제품신고 바로가기



Q.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요?

대기전력저감대상 - 14 품목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유무선공유기

대기전력 경고 표지(의무) 대상 - 10 품목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홈게이트웨이

Q.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이 통폐합된다고 하던데 설명해 주세요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5년 11월)에 따라 품목별 지정 적정성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품목 폐지/이관 진행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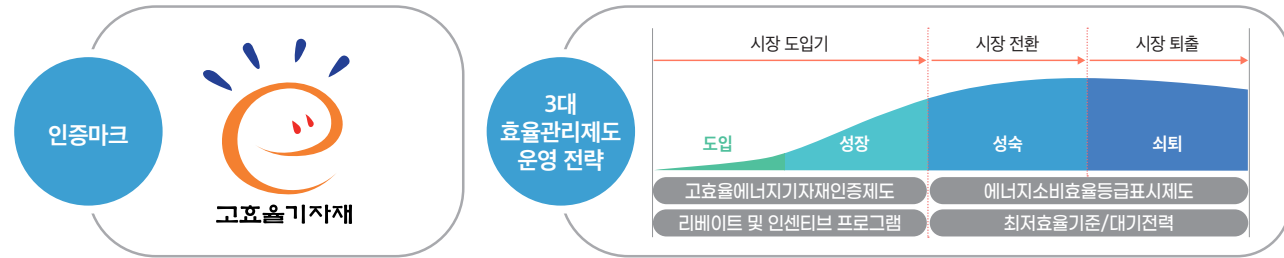
목적은 시장수요가 있는 품목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대체제 개발에 따라 시장수요가 금감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란?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기기·설비를 인증하여 시장형성 및 고효율 제품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기준 이상의 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서 발급 및 마크 표시를 할 수 있는 자율 참여 제도입니다.



Q.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 접속 ➡ 제품신고 및 인증신청 ➡ 고효율인증제도 ➡ 하단 고효율인증 바로가기

* 고효율인증제도의 경우 인증 수수료가 존재하며, 최신 수수료 정보는 고효율인증시스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가이드북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요?

26년 4월 기준 총 25 품목이 대상이며 세부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명설비(5 품목) : 등기구, LED램프, LED유도등, 문자간판용 LED모듈, 스마트LED조명시스템
- 전력설비(9 품목) : 무정전전원장치(UPS), 인버터, 전력저장장치(ESS), 펌프, 원심식 송풍기, 터보압축기,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최대전력수요제어기, 회생제동장치
- 냉방난방(8 품목) :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가스건조온수보일러,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스크류 냉동기, 향온향습기, 가스히트펌프(GHP), 중온수흡수식냉동기, 공기-물 히트펌프
- 단열설비(3 품목) : 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 금속제 커튼월

Q. 인증을 받았을 때 혜택이 있을까요?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설치자 장려금 지원 : 인증제품 설치 시 지급 (대상 : GHP 등. GHP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통해 신청)
- ②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우수조달물품 품질 소명 자료로 활용 가능.
- ③ 공공기관 고효율기자재 사용 의무화 : 옥외조명 및 지하주차장 설치 시 인증 LED제품 사용 의무 등
- ④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난방/냉방/급탕/조명기기, 변압기 등에 인증제품 사용 의무/권장
- ⑤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인증 제품 활용 생산시설 설치사업자에 융자지원 및 세액공제



사후관리 및 위반 시 벌칙은?

신고 의무 대상 미신고 모델의 생산, 유통,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효율등급 및 에너지효율 등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효율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효율관리기자재 및 대기전력저감 사후관리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 제21조(대기전력저감품목),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8조(사후관리 등),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9조(사후관리 등)

제품측정 사후관리	유통매장점검 사후관리	자율 사후관리
제품 구매 및 성능 측정 후 라벨값과 실제 측정값 비교	온·오프라인 매장 점검 (신고/라벨 부착 여부 확인 등)	자사제품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사후관리 문화 확산
현장 사후관리	시험기관 사후관리	산업기기 특별 사후관리
현장방문 미신고 제품 판매/수입 여부, 라벨 표시 의무 이행 확인	인력/설비 등 고시에 따른 시험기관 유지 적합성 평가	국내 삼상유도전동기, 공기압축기, 펌프 등 응용기기 산업 질서 확립

사후관리 위반 시 벌칙

제품 미신고 시	라벨 허위(미)표시 시	최저기준 미달제품 생산/판매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3항)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2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항)

* 효율관리/대기전력 동일 * 대기전력 위반 시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그 외의 벌칙

제조·수입업자는 매년 1.1.~3.31.에 전년도 생산·판매 실적 제출 의무 有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제품 홍보·판매 위한 광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포함 의무 有
생산/판매 실적 미제출 시	광고 내 관련 내용 미포함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6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4항)

고효율인증 사후관리 종류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사후관리 등), 건축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9조(사후관리 등)

제품 사후관리	공장 사후관리	시험기관 사후관리
제품 구매 및 성능 측정 후 기준 적합 여부 확인	고효율인증 제품 제조공장에 대한 품질 점검	인력/설비 등 고시에 따른 시험기관 유지 적합성 평가

사후관리 위반 시 벌칙

고효율인증 라벨 허위표시 시	거짓/부정 인증 또는 기준 미달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제5항)	인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기간 인증 사용 금지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



효율등급제도/대기전력저감 품목 변경사항 안내

효율관리기자재 기준 신규도입, 제도이관 및 기준개선 품목

2026년 4월 기준 최신 고시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6호)

상세내용은 효율관리제도(eep.energy.or.kr) 고객센터 자료실 최신법령/고시 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자
신규도입 품목	의류관리기	최저소비효율기준 신설	2026년 01월 01일
제도이관 품목	비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에서 효율등급제로 이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5등급 기준 신설	
기준개선 품목	전기세탁기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상향(일반/드럼)	2025년 12월 31일
	안정기내장형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전기밥솥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상향	2025년 07월 01일
	전기레인지	관리체계 변경(최저소비효율기준제 → 등급제)	
	전기온풍기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기준개선 예정 품목	전기냉방기	• 싱글형 및 홈멀티형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상향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방전용제품을 냉방기 멀티형으로 통합 • 홈멀티형 냉방기 시험측정방법 변경	2026년 11월 01일
	전기냉난방기	• 싱글형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상향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겸용제품을 냉난방기 멀티형으로 통합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품목 삭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제외 및 제도 이관 품목

2026년 4월 기준 최신 고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5호)

효율관리제도(eep.energy.or.kr) 고객센터 자료실 최신법령/고시 내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구분	품목명	예정년도
효율등급제도 이관 예정 품목	전자레인지, 서버, 자동절전제어장치, 유무선전화기, 도어폰, 프린터, 오디오, 유무선공유기	순차적 이관 예정
제외 예정 품목	홈에이트웨이, 복사기, DVD플레이어, 스캐너, 라디오카세트, 손건조기	순차적 제외 예정



효율등급제도 품목 주요 변경사항

신규도입 및 제도이관, 관리체계 변경 품목

시장 수요 변화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품목 도입, 제도 간 이관, 관리체계 변경을 위한 고시 제·개정을 진행하여 기자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신규 의류관리기	적용범위 KS K 0891 규정에 의한 섬유제품의 건조, 구김 제거, 탈취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의류관리기	최저소비효율기준 신설 1회 사용시 최대 소비전력량(Wh) 2026년 01월 01일부터 430
		오프모드 최대 대기전력(W) 2026년 01월 01일부터 ≤1.5
제도이관 비데	적용범위 위생기기의 일종으로 물을 따뜻하게 하여 용변 후 사용자의 항문 또는 국부에 분사하여 세척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정격소비전력 3,500W 이하의 온수장치, 세정장치, 전열 변화 등으로 구성된 전기식 비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5등급 기준 신설 연간소비전력량은 $R = \frac{\text{월간소비전력량}}{\text{최대소비전력량기준}}$
		최대소비전력량기준(kWh/월) 2026년 01월 01일부터 32
체계변경 전기레인지	적용범위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정격 소비전력이 1k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레인지	최저소비효율기준 → 1~5등급 기준 변경 $R = \text{당해 모델의 단위 소비전력량(Wh/kg)}$
		R ≤ 173 173 < R ≤ 181 181 < R ≤ 189 189 < R ≤ 197 197 < R ≤ 205